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565호
------------	-------

제출년월일 : 2004. 12.
제 출 자 : 김포시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립기반 확립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명칭 변경사항(모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회관의 기본시설 정의 내용을 "교육실, 회의실, 전시실, 대강당, 상담실, 보육실"로 현 운영체제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호)
- 나. 사용료증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5조제6호,7호)
- 다. 사용료의 반환 내용 중 "월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할"을 "교육생이 수강 취소를 신청할"로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6조제5호)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2004.11.8 ~ 11.28)결과 의견없음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강당, 요리교실, 미용교실, 양재교실, 한복교실, 컴퓨터교실, 꽃꽂이교실, 서예교실, 음악교실, 어학교실, 체육실, 회의실, 알뜰교환판매장, 상담실, 보호실, 유아실등)"을 "(교육실, 회의실, 전시실, 대강당, 상담실, 보육실)"로 한다.

제5조 제목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제5조중 "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 시설의"를 삭제하고, "면제"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삭제하고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5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

제6조제5호중 "월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할"을 "교육생이 수강 취소를 신청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여성회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여성회관장
	담 당 성 명	관리담당 업 덕 종
	담 당 자 성명·전화	정우훈 980-5145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생략)</p> <p>1. 회관의 시설 이라 함은 기본시설(<u>강당</u>, <u>요리교실</u>, <u>미용교실</u>, <u>양재교실</u>, <u>한복교실</u>, <u>컴퓨터교실</u>, <u>꽃꽂이교실</u>, <u>서예교실</u>, <u>음악교실</u>, <u>어학교실</u>, <u>체육실</u>, <u>회의실</u>, <u>알뜰교환판매장</u>, <u>상담실</u>, <u>보호실</u>, <u>유아실등</u>)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옥외주차장, 옥외조형물)등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현행과 같음)</p> <p>1.-----(<u>교육실</u>, <u>회의실</u>, <u>전시실</u>, <u>대강당</u>, <u>상담실</u>, <u>보육실</u>)-----</p> <p>-----</p> <p>-----</p> <p>-----</p> <p>-----</p> <p>-----</p>
<p>제5조 (사용료 및 심리검사료 면제)</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강당</u>, <u>회의실</u>, <u>전시실</u>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 및 심리검사료를 <u>면제</u>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u>의료보호대상자</u></p> <p>4. <u>모자복지법</u>에 의한 <u>요보호 대상자</u></p> <p><신설></p> <p><신설></p> <p>5. (생략)</p>	<p>제5조 (사용료 및 심리검사료 감면)</p> <p>-----<<u>삭</u> <u>제</u>>-----</p> <p>----- <u>일부 또는 전부 감면</u> -----</p> <p>1.~2. (현행과 같음)</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u>삭</u> <u>제</u>></p> <p>4. <u>모·부자복지법</u>에 의한 <u>보호대상자</u></p> <p>5. <u>장애인복지법</u>에 의해 등록된 <u>장애인</u></p> <p>6. 만 65세 이상 <u>김포시민</u></p> <p>7. (현행과 같음)</p>
<p>제6조 (사용료의 반환) (생략)</p> <p>1.~4.(생략)</p> <p>5. <u>월회원등이 취소권을 제출할</u>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 사용료의 해당 금액을 반환</p>	<p>제6조(사용료의 반환)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교육생이 수강 취소를 신청할</u> -----</p> <p>-----</p> <p>-----</p>